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중심으로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글로벌법제 연구 12-22-⑥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중심으로 -

김 형 건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e and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on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 Focusing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

연구자 : 김형건 (부연구위원)
Kim, Hyung-Gun

2012. 11. 19.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하여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태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과 디지털화된 교육환경은 국가에 따라 혹은 국가 간에 있어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내용 및 적용과 관련하여 난해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의 저작권상설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음
-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 24차 특별회의를 통해 WIPO저작권상설위원회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 논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으며, 그에 관한 국제규범(안)의 주요 내용이 제안되었음
-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제규범이 제정된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조약의 체결에 대비하고, 적절한 국내법적 대

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한 분석과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논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현행 국제조약하에서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분석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조항 및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분석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 제24차 특별회의의 회의 결과를 검토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분석
 - 미국·독일·일본·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을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교실에서

의 이용,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그리고 연구 목적의 이용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검토·분석함

-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향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과 시사점 도출

Ⅲ. 기대효과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향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입법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 체결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주제어 :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 3단계 테스트, 저작권 국제규범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Due to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copyright law, countries have different copyright laws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With products of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digital works and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this may cause challenging issues in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 In order to resolve such issues and maintain substantial balance among different countries' copyright laws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the WIPO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 has been discussing the prepar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since 2005.
- There have been significant advances in the discussion for th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Textual suggestions and comments for th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were proposed at the 24th WIPO SCCR meeting, held in Geneva, Switzerland from July 16 to 25, 2012.

- And, in light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ies and conventions that were initiated by the WIPO SCCR,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current discussion at the WIPO SCCR will also lead to a new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y or convention. Therefore, it is worthwhile or even necessary to review and analyze the textual suggestions and comments for the international copyright instrumen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dictions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for the international copyright instrument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discussion at the WIPO SCCR.

II. Main Contents

- An Analysis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under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ies and Conventions
 - Analyzes provisions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and the three-step test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und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ies and conventions

- A Review of Current State of the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 Reviews the result of the 24th WIPO SCCR meeting held in Geneva, Switzerland from July 16 to 25 2012 (provisional working document towards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in whatever form)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al,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persons with other disabilities containing comments and textual suggestions)
- A Comparative Review and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s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 Comparatively reviews and analyzes U.S., German, Japanese and Korean copyright laws on copyrights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 Predictions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III. Expected Effect

- This report provides legislative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discussion at the WIPO SCCR.
- This report provides the basis for drafting domestic legislations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 **Key words :**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WIPO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hree-Step Test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n Copyrigh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 2 장 현행 국제조약하에서의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19
제 1 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검토	19
1. 베른협약	19
2. 세계저작권협약	20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	21
4. WIPO저작권조약 및 WIPO실연·음반조약	22
제 2 절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24
1. TRIPs협정과 베른협약과의 관계	24
2. 3단계 테스트의 요건	24
제 3 절 소 결	26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29
제 1 절 국제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의 배경과 현황	29
제 2 절 제24차 특별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	30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Educational,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30
2. 교실에서의(In-Classroom) 이용	35
3. 교실 이외의 장소(Outside Classroom)에서의 이용	40
4. 원격 교육(Distance Learning)을 위한 이용	46
5. 연구 목적의 이용	51

제 4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 1 절 미국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57
2. 교실에서의 이용	59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60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61
5. 연구 목적의 이용	62

제 2 절 독일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62
2. 교실에서의 이용	63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64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64
5. 연구를 위한 이용	65

제 3 절 일본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66
---------------------------	----

2. 교실에서의 이용	68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69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69
5. 연구 목적의 이용	70
제 4 절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70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71
2. 교실에서의 이용	72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72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73
5. 연구 목적의 이용	73
제 5 절 소 결	74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77
참 고 문 헌	8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의 등장을 가능케 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상화된 사회를 만들어냈으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WIPO저작권조약 등과 같은 다수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저작권 보호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저작권제도의 통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¹⁾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하여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태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과 디지털화된 교육환경은 국가에 따라 혹은 국가 간에 있어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내용 및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난해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 (이하 “WIPO”)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이하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는 국제적 차원에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규정하는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200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1) 박덕영, 국제조약상 저작권제한과 예외규정 및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 산업재산권 제25호(2008.04), 324면.

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4차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동 위원회는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이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 논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으며,²⁾ 그에 관한 국제규범(안) 일부 내용의 제안으로 이어졌다.

WIPO저작권상설위원회는 제24차 특별회의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차기 특별회의에서도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며,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안)’을 제30차 특별회의가 개최될 2015년까지는 WIPO 총회(The WIPO General Assembly)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WIPO저작권상설위원회를 통한 국제규범의 제정 선례들³⁾에 비추어 볼 때, WIPO 주도의 국제조약의 체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비하고, 적절한 국내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규범 준비 작업에 대한 분석과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특별회의에서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 중에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을 검토·분석하여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현재 i)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ii)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iii)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iv) 방송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 지난 6월 24일, 중국 베이징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문제에 관한 WIPO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보고서는 현행 국제조약상에서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분석,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그리고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이렇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현행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상에서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그리고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요건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제24차 특별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전 3장에서 검토·분석한 내용에 기초하여,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현행 국제조약하에서의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제 1 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검토

1. 베른협약⁴⁾

베른협약은 문학·예술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86년 9월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베른협약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최소한의 보호 기준, 무방식주의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제한과 예외 그리고 특별한 제한과 예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베른협약은 저작물의 복제와 관련하여 제9조 1항에서 “저작자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⁶⁾ 일반규정으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임의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외로, 제9조 2항에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⁷⁾를 허용하는 것은 회원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⁸⁾⁹⁾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저

4)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Berne Convention”)를 지칭한다.

5)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 및 행사에 있어서 어떤 형식요건이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6) Berne Convention §9(1).

7) 녹음이나 녹화도 복제로 간주된다. Berne Convention §9(3).

8) Berne Convention §9(2).

9) 베른협약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망라하는 대신 각 회원국이 국내법에 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은 회원국에 맡기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은 제10조 1항에서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¹⁰⁾ 제10조 2항에서는 회원국의 법령 또는 회원국 간의 현행 또는 장래에 체결될 특별한 협정에 따라 “교육을 위하여 문학·예술 저작물을 도해로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 녹화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¹¹⁾ 다만, 인용 및 교육 목적의 이용은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공정한 관행과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고,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표시된 경우에 한함)을 명시하여야 한다.¹²⁾

2. 세계저작권협약¹³⁾

세계저작권협약은 미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한 범아메리카조약(Pan-American Convention) 국가들이 채택한 방식주의¹⁴⁾와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이 가맹하고 있는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성립된 협약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하여 제한 및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법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덕영, 앞의 논문, 324-25면.

10) Berne Convention §10(1).

11) Berne Convention §10(2).

12) Berne Convention §10(3).

13)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이하 “UCC”)을 지칭하며, 문학·음악·미술 및 지적인 작품을 포함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자와 저작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조약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주도로 1952년 9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 1955년 9월 16일 발효되었다.

14) 방식주의란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저작 이외에 관청에의 등록 및 납본, 저작권 표시 등과 같은 일정한 방식의 이행이 요구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방식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는 저작권의 취득을 위해 저작권청에의 등록과 ©마크의 표시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미국도 1976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방식주의를 포기하고,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양선영, 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 범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02), 20면.

가입국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라는 저작권 표시 기호를 저작물에 표기하면 방식주의 국가들에서도 일정한 방식의 이행 없이 그 저작권이 보호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약이다.¹⁵⁾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하여 세계저작권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제4조의2 2항에서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으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본 협약의 정신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법으로 그러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체약국은 예외가 규정된 각 권리들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 고 규정하여,¹⁶⁾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을 체약국의 국내 입법에 일임하고 있다.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¹⁷⁾

TRIPs협정은 각국의 다양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통일화하고, 위조상품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서의 하나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전문과 본문 총 7장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규율하고 있다. TRIPs협정의 채택은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별 국제조약에 의해 규율되어 오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WTO에 의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통일된 기준 하에 규율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¹⁸⁾ 또한, TRIPs협정은 기존의 국제조약들과는 달리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집행과 그와 관련한

15) UCC §

16) UCC §4bis(2).

17)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Agreement”)를 지칭한다.

18) 박덕영, 앞의 논문, 331-32면.

절차적 규정들을 두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지적재산권의 집행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TRIPs협정 중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조항은 제9조 내지 제14조이며, 제9조 1항에서는 당해 국가가 베른협약의 회원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들이 베른협약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권의 제반 내용에 관한 한 베른협약이 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¹⁹⁾ 또한, 제13조에서는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정하고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²⁰⁾ TRIPs협정은 이 조항을 통해 저작권의 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4. WIPO저작권조약²¹⁾ 및 WIPO실연·음반조약²²⁾

WIPO저작권조약과 WIPO실연·음반조약은 1996년 12월 WIPO 주관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문제에 관한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이들 조약들은 기존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²³⁾ 기술과 조약

19) TRIPs협정은 “본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약상의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TRIPs Agreement §2(2).

20) TRIPs Agreement §13; 다만, 베른협약과는 달리 제한되는 권리를 복제권에 한정하지는 않고 있다.

21) 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를 지칭한다.

22)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를 지칭한다.

23) 베른협약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개정을 거듭했으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간과했거나 불완전했던 부분이 존재하는 바, 이를 온전히 처리하자는 것이다. WIPO

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²⁴⁾ 베른협약 제20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형태로 채택되었다.²⁵⁾

WIPO저작권조약은 제10조 1항에서 “체약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²⁶⁾ 제10조 2항에서는 “체약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²⁸⁾

WIPO실연·음반조약은 제16조 1항에서 “체약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제한이나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²⁹⁾ 제16조 2항에서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실연이나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

저작권조약에서는 저작물 종류의 확대,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 등에 관한 규정이 이러한 목적에서 규정되었다. 최경수,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의 체결과 그 의의, 창작과 권리 제6호(1997.03), 34-35면.

24) 베른협약이나 로마협약은 디지털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성이 생겼다. 최경수, 위의 논문, 35면.

25) 따라서 TRIPs협정과 마찬가지로 베른협약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의 적용을 받는다.

26) WCT §10(1).

27) WCT §10(2).

28) WIPO저작권조약은 1) 복제권에 대한 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을 모든 권리에 대한 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하였다는 점과, 2) 국내법에 존재하고 있는 제한과 예외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규범에 비추어 판단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베른협약의 보호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수, 앞의 논문, 40-41면.

29) WPPT §16(1).

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제 2 절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1. TRIPs협정과 베른협약과의 관계

베른협약을 통해 복제권을 제한하는 법리로 처음 등장한 3단계 테스트 법리는 WIPO저작권조약과 TRIPs협정 등을 통해 저작권 제한의 일반원칙으로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른협약과 TRIPs협정 하에서의 저작권 제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TRIPs협정에서는 “회원국은 ...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베른협약에서는 “... 당사국의 입법에 맡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TRIPs협정이 베른협약에 비해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제한의 범위에 있어서 베른협약은 복제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TRIPs협정은 모든 배타적 권리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³¹⁾ 그리고 베른협약에서는 권리제한의 요건으로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TRIPs협정은 저작자에게 필요로 하지 아니한 이익을 언급함으로써 고려해야 할 이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 3단계 테스트의 요건

아일랜드의 음악저작권 단체(The Irish Music Rights Organisation)를 대신하여 유럽연합이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

30) WPPT §16(2).

31) 번역, 대중공연, 방송과 다른 전달, 공적인용, 개작, 대여도 포함하고 있다.

건³²⁾³³⁾에서 WTO 패널이 3단계 테스트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 있어, WTO 패널의 견해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제한을 위한 국제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정되고 특별한 경우

‘특정한’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WTO 패널은 각 국가의 입법에 있어서 제한과 예외는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예외의 범위가 알려지고, 특정화 될 수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모든 가능한 상황을 정해 둘 필요는 없고 규범적 의미에서 명확한 정도의 수준이면 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특별한’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목적을 고려하여 좁게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3단계 테스트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정한 제한이나 예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범위는 좁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³⁴⁾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저촉되지 않을 것

WTO 패널은 두 번째 요건에서의 ‘이용’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저작자가 통상 저작물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과 경쟁관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중대한 영업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통상’이라는 용어는 현실적 이용과

32) 유럽연합은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가 TRIPs협정 제9조 1항에 의해 TRIPs협정의 일부가 된 베른협약 제11조 1항과 제11조의2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미국이 TRIPs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제소하였다.

33) 이 사건에 관하여는 김은정, 국제통상법에서 저작권 보호의 변화와 그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 및 FTA 협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02), 59-90면 참조.

34) 민경재,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2), 89-90면 참조.

잠재적 이용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관행이나 권리자의 기대가능성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경우 및 잠재적 이용가능성과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권리자의 저작권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⁵⁾

(3)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WTO 패널에 따르면, ‘이익’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인격권 등에 의한 이익을 포함한다. ‘정당한’은 이익의 보호를 위한 요청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기초를 두는 목적론적 견지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조약의 규정이 저작권자에게 다소의 침해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와 제한이 저작자의 수입에 불합리한 상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침해가 ‘불합리한’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패널은 비록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에 불합리한 손해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 3 절 소 결

앞서 살펴보았듯이, TRIPs협정, WIPO저작권조약, WIPO실연·음반조약 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의 제한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3단계 테스트 자체가 각국에 어떠한 입법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가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각국

35) 박덕영, 앞의 논문, 340-41면.

은 그러한 3단계 테스트를 준수할 의무만 가질 뿐,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은 각국의 국내 입법에 일임되어 있다고 하겠다.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 1 절 국제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의 배경과 현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과 디지털화된 교육환경 등은 국가에 따라 혹은 국가 간에 있어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의 내용과 적용범위 등과 관련하여 난해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가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은 각국의 국내 입법에 일임하고 있고,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태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제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WIPO저작권상설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규정하는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2008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16차 WIPO상설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가 주요의제 중에 하나로 채택되면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 개최된 제24차 특별회의에서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안)의 일부 내용이 제안되었으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25차 특별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초안³⁶⁾이 마련되는 등 그 간의 논의가 결실을 맺고 있다.

36) See generally,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WIPO저작권상설위원회는 특별회의를 통해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며, 제30차 특별회의가 개최될 2015년까지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안)’을 WIPO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 2 절 제24차 특별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³⁷⁾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24차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특별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2) 교실에서의 이용,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5) 연구 목적의 이용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해 정리된 각국의 입장을 밝혔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Educational,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에 관련하여, 공·사립학교,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록보관소, 도서관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제규범(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한 저작물 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November 23, 2012), available at http://www.wipo.int/edocs/mdocs/copyright/en/sccr_25/sccr_25_2.pdf.

37)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WIPO저작권상설위원회(SCCR) 제24차 특별회의에서의 논의를 정리한 문서인 Provisional Working Document towards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In Whatever Form)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al,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Persons with Other Disabilities Containing Comments and Textual Suggestions (July 31, 2012) (이하 “Provisional Working Document”)에 기초하여 작성된 내용이다.

먼저, 아프리카 국가 그룹은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을 크게 1) 교육, 학문 또는 연구의 촉진을 위한 권리와 2) 저작물의 수출과 수입(권리소진)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국제규범(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 학문 또는 연구의 촉진을 위한 권리와 관련하여, 계약당사국에 위치한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은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이를 복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교육 목적으로 제작·배포되는 교육 자료에 이용할 수 있고, 상기 이용으로 인해 얻어진 저작물 복제본을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에 적법하게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수출과 수입(권리소진)에 관하여서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학생이 적법하게 취득한 저작물을 권리자의 승인 없이 판매,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영상으로 대중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의 경우에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대여 또는 대출할 수 있고,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수진, 직원 또는 학생에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의 제한이 교과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2) 학교 또는 대학에서의 교육, 공교육 또는 사교육, 원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의 과정이나 또는 연구자의 연구에 이용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3) 학생, 교사 및 연구자와 같이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이용이어야 하며, 4) 상업적 목적이 없어야 하고, 5) 이상의 이용이 일정액의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다섯 가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자국의 저작권법의 내용을 소개했다.

유럽연합 역시 회원국에게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제한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국의 저작권법상에 그러한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을 위한 그러한 권리의 제한이 3 단계 테스트가 적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은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에서 현장교육 및 원격교육 모두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공정이용’의 법리에 따라 교육이나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이용되거나 권리자의 상업적 이익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교육 및 연구기관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안)³⁸⁾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아프리카 그룹	12.1. 적용대상	본 조약은 장애인,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생, 도서관, 기록보관소에 적용된다.
	13. 교육, 학문 또는 연구의 촉진을 위한 권리	(1) 체약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은 교육, 개인 학습 또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복제 방식으로 발행하는 행위 b. 번역된 저작물의 복제와 출판 c. 기관의 구성원인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 d.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교육 목적으로 제작·배포되는 교육 자료에 포함시

38) SCCR, Provisional Working Document, pp. 11-12.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키는 행위</p> <p>(2) 체약국에 거주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복제저작물을 UN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으로 분류되는 다른 체약국에 적법하게 수출할 수 있다.</p>
	<p>14. 저작물의 수입과 수출 - 권리소진</p>	<p>(1) 베른협약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에 주소지를 둔 교육기관, 도서관, 연구기관 또는 학생이 적법하게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권리자의 승인 없이 그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물을 판매, 수입, 수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p> <p>(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 영상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을 구현하는 테이프, 디스크 또는 다른 형태의 매체를 포함)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권리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녹음에 대한 특정한 복제본(음반)을 소유하는 자나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정한 복제본 또는 그 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을 구현하는 테이프, 디스크 또는 다른 형태의 매체를 포함)에 대한 특정한 복제본을 소유하는 자는 체약국에서 직·간접적인 상업이익을 위하여 대여나 대출 또는 대여나 대출의 본질을 갖는 다른 행위나 관행을 통해 그 녹음, 영상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을 구현하는 테이프, 디스크 또는 다른 형태의 매체를 포함)의 특정한 복제본에 대한 소유</p>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를 처분하거나 소유에 대한 처분을 승인하지 못한다.</p> <p>(3) 전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주소지를 둔 도서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의 대여 또는 대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4) 체약국에 주소지를 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교육기관이나 교수진, 직원 및 학생에게 이전하는 것은 (2)항에서의 직·간접적인 상업이익을 위한 대여나 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p> <p>(5)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는 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 권리자의 승인 없이 체약국 내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그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물을 직접 또는 (한 번에 한 장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의) 영상으로 공중에 전시할 수 있다.</p>
인도	12.2 적용대상	<p>체약국은 본 조약에서 보장되는 예외 및 제한을 본 조항에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 공·사립학교, 비영리연구·교육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p>
파키스탄	12.3 적용대상	<p>체약국은 본 조약에서 보장되는 예외와 제한을 본 조항에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 공·사립학교, 비영리교육·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p>
브라질	18. (무제)	<p>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p>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목적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이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실연, 낭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 한함) 2.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한 교사의 예증에 이용될 교육 자료를 위해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저작물 전체(시각예술작품이나 단편작품의 경우)를 복제, 번역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 한함) 3. 강연, 학술회의, 수업에 참가한 자에 의한 노트 필기 (강연자, 학술회의 발표자, 교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상기 노트 필기를 출판할 수 없음) 4. 연구, 비평 또는 토론의 목적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책,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 한함)

2. 교실에서의(In-Classroom) 이용

교실에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국가 그룹은 1) 학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2) 책이나 기타 교재의 가격이 교육기관이나 학생이 부담하기 힘든 정도로 비싼 경우에

학생이나 교사에 의해 책이나 교재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3) 교육의 목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번역본을 만드는 경우, 4) 출판자로부터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5) 이상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비용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안)을 제시했다.

브라질의 제안(안)의 경우에는, 1) 교육기관 내에서 교육 목적에서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출처나 저작자의 성명을 밝히고 작품의 공연, 낭독, 전시를 할 수 있고, 2) 강의, 학술회의 또는 수업에 대한 노트 필기는 가능하나, 그에 대한 부분 또는 전체의 출판은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금지되며, 3) 연구, 비평 또는 논쟁을 위해 책, 신문, 잡지 등으로부터 인용된 부분은 출처나 저작자의 성명을 밝히고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실연, 복제, 교실에서의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 배포 등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그룹(GRULAC)의 국제규범(안)과 저작권자의 동의나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없이 교실에서의 수업 또는 과학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된 저작물을 소량 번역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목 및 출처를 밝힌 경우에 한해)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규범(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은 교실에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1항의 내용에 의거해 그것이 비영리 교육기관에서의 대면(face-to-face) 교육활동에 해당되고, 이용된 저작물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교육자나 학생에 의한 그러한 저작물의 전시나 공연은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혔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브라질의 제안(안)이 교육활동에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표 2> 교실에서의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안)³⁹⁾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아프리카 그룹	23.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 침해에 대한 구제 제한	<p>(1) 베른협약 제10조,⁴⁰⁾ 제10조의 2,⁴¹⁾ 부속서 및 베른협약의 기타 조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더하여, 그리고 TRIPS 조약 44.2조⁴²⁾에 따라, 체약국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 구제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수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기사를 복제하는 행위 b.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이용되는 책이나 다른 저작물의 가격이 교육기관 또는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경우에 이를 복제하는 행위 c.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 d. 출판사로부터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저작물, 그리고/또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해 신의에 좇아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저작물의 복제 <p>(2) 전항의 1호 내지 4호를 이행함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구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p>

39) SCCR, Provisional Working Document, pp. 18-19.

40) Berne Convention §10 참조.

41) Berne Convention §10bis. 참조.

42) TRIPs Agreement §44(2) 참조.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아프리카 그룹	23.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 침해에 대한 구제 제한	<p>a. 저작물의 이용과 배포가 교육을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이용에 대해 침해자가 침해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권리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 이외의 금전손해배상(실 손해액, 법정손해액, 경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포함)이 청구되지 아니한다.</p> <p>b.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비용은 저작물의 이용이 발생한 체약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체약국은 보상비용 지급 만기일을 포함해 어떤 조건 하에 보상비용의 지급을 정할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비용에 관한 가능한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체약국의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 교육 장려와 문화 전파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보공유 촉진의 필요성과 같은 체약국의 공익 의무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기관 이용의 비상업적 본질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p> <p>(3) 본 조는 국제연합총회⁴³⁾의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p>
브라질	24. (무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43)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를 지칭한다.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브라질	24. (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목적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이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실연, 낭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 한함) 2.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한 교사의 예증에 이용될 교육 자료를 위해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저작물 전체(시각예술작품이나 단편작품의 경우)를 복제, 번역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 한함) 3. 강연, 학술회의, 수업에 참가한 자에 의한 노트 필기 (강연자, 학술회의 발표자, 교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상기 노트 필기를 출판할 수 없음) 4. 연구, 비평 또는 토론의 목적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책,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 한함)
GRULAC 44)	25. (무제)	<p>교육 목적의 이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연 2. 복제 3. 교실에서의 저작물의 전체 또는 저작물의 일부 배포 4. 다른 변형

44) 국제연합(UN) 내의 지역 그룹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그룹을 지칭한다.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중국	26. 교실에서의 수업	학교 교실에서의 수업 또는 과학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된 저작물의 소량을 번역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러한 소량의 번역과 복제는 교실에서의 토론과 도해 교육을 위해 배포, 전시 또는 실연되는 교실 수업자료에 편입될 수 있다.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목 및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상기 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나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3. 교실 이외의 장소(Outside Classroom)에서의 이용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국가 그룹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교사나 학생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안)을 제안했다. 아프리카 국가 그룹의 제안(안)은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 1) 네트워크상에서의 전송을 위한 임시적 복제, 2) 일종의 사진 기술 등을 이용한 복제, 3) 상호운영성 확보,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역설계나 역분석, 4) 병원 또는 교도소 등의 장소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방송을 재생하는 행위, 5)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6) 비평이나 검토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7) 공중보건 또는 공공안녕을 위한 이용, 8)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 강연 또는 그와 유사한 저작물의 이용, 9)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파스티세를 위한 이용, 10) 공개된 장소에 위치하는 건축물이나 조각품 등의 이용, 그리고 11) 장비의 설명 또는 수리와 관련된 이용 등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접

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한이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경우에 따라 공정 이용의 법리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제안(안)에 포함되어 있다.

<표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안)⁴⁵⁾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아프리카 그룹	30.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p>(1) 체약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권리자의 승인 없이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교사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에 동의하여야 한다.</p> <p>a. 매개체를 통해 제삼자들 사이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적 또는 부수적이고 기술적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인 일시적 복제</p> <p>b. 일종의 사진 기술의 이용 또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어떤 과정에 의하여 야기되는 복제</p> <p>c. 사적 이용 및 학습이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상업적 관련성이 없는 목적을 위해 어떠한 매체로 복제하는 행위</p> <p>d. 방송기관이 방송을 위해 설비를 이용하여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일시적 녹음(녹화)(이례적인 기록물적 특성에 근거하여 그러한 녹음(녹화)를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공적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는</p>

45) SCCR, Provisional Working Document, pp. 21-24.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p> <p>e. 병원 또는 교도소와 같은 일상적인 학습 환경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복제하는 행위</p> <p>f. 전적으로 번역, 시험, 학습 또는 과학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 한함)</p> <p>g. 상호운영성 확보,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역설계 또는 역분석</p> <p>h.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특정 장애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러한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p> <p>i. 시사 보도에 있어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대상의 이용</p> <p>j.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대상이 이미 대중에 공개되어 있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가 표기되어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정 관행에 따라 행해지는 비평이나 검토 등을 위한 인용</p> <p>k. 공중보건 또는 공공안녕을 위한 이용</p> <p>l. 행정, 입법, 사법 절차의 적절한 이행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이용</p> <p>m.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 강연 또는 그와 유사한 저작물을 정보 제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 한함)</p>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n.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파스티세를 위한 이용</p> <p>o. 건축물이나 조각품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p> <p>p. 다른 자료에 저작물 또는 저작권인접권 보호대상을 부수적으로 삽입하는 행위</p> <p>q. 일체의 상업적 이용을 배제하고, 예술작품의 공개 전시회 또는 판매를 광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p> <p>r. 장비의 설명 또는 수리와 관련된 이용</p> <p>s. 통신에 의한 이용 또는 연구 또는 사적 이용</p> <p>(2) 전항에 규정된 특별한 예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베른협약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립된 국가의 관행에 따라 새로운 예외와 제한을 정할 수 있다.</p> <p>(3) 체약국은 본 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예외에 더하여 공정 이용의 법리를 채택할 수 있다.</p>
	<p>31.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 침해에 대한 구제 제한</p>	<p>(1) 베른협약 제10조, 제10조의 2, 부속서 및 베른협약의 기타 조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더하여, 그리고 TRIPS 조약 44.2조에 따라, 체약국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 구제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p> <p>a. 수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기사를 복제하는 행위</p> <p>b.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이용되는 책이나</p>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다른 저작물의 가격이 교육기관 또는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경우에 이를 복제하는 행위</p> <p>c.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p> <p>d. 출판사로부터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저작물, 그리고/또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해 신의에 좇아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저작물의 복제</p> <p>(2) 전항의 1호 내지 4호를 이행함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구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p> <p>a. 저작물의 이용과 배포가 교육을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이용에 대해 침해자가 침해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권리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 이외의 금전손해배상(실 손해액, 법정손해액, 경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포함)이 청구되지 아니한다.</p> <p>b.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비용은 저작물의 이용이 발생한 체약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체약국은 보상비용 지급 만기일을 포함해 어떤 조건 하에 보상비용의 지급을 정할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비용에 관한 가능한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체약국의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 교육 장려와</p>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문화 전파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보공유 촉진의 필요성과 같은 체약국의 공익 의무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기관 이용의 비상업적 본질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p> <p>(3) 본 조는 국제연합총회의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p>
GRULAC	32. (무제)	<p>교육 목적의 이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연 2. 복제 3. 교실에서의 저작물의 전체 또는 저작물의 일부 배포 4. 다른 변형
브라질	33. (무제)	<p>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목적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이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실연, 낭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 한함) 2.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한 교사의 예증에 이용될 교육 자료를 위해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저작물 전체(시각예술작품이나 단편작품의 경우)를 복제, 번역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기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한 경우에 한함)</p> <p>3. 강연, 학술회의, 수업에 참가한 자에 의한 노트 필기 (강연자, 학술회의 발표자, 교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상기 노트 필기를 출판할 수 없음)</p> <p>4. 연구, 비평 또는 토론의 목적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책,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 한함)</p>

4. 원격 교육(Distance Learning)을 위한 이용

아프리카 국가 그룹이 제시한 국제규범(안)은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원격 교육 과정을 위한 1) 교육 목적의 범위 내에서의 연극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등의 실연과 2)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의 전시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1)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학생의 접근을 가능케 하기 위한 콘텐츠 보유와 2)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콘텐츠 전송을 위해 디지털 전송의 기술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자료의 순간저장 또는 임시저장을 포함한 복제와 저장에 있어서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격 교육 방송의 복제본을 녹음(녹화)하거나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디지털 시대의 현실에 맞는 교육·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2002년에 제정된 이른바 TEACH Act(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에 의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가 개정되었으며, 그 결과로 특정한 제한 아래 원격 교육에서의 저작물의 공연이나 전시, 그리고 저작물의 전송과 수신 등을 허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표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안)⁴⁶⁾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아프리카 그룹	36. 원격 교육	<p>(1) 체약국에 위치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원격교육과정을 위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이용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p> <p>a. 교육의 목적 범위 내에서의 연극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실연</p> <p>b.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의 전시</p> <p>(2) 전항의 규정은 확립된 커리큘럼 또는 합리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교육 활동의 일부분으로서의 실연이나 전시를 위해 판매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3)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체약국에 위치한 교육기관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격교육방송의 복제본을 녹음(녹화)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p> <p>a.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학생의 접근을 위한 콘텐츠 보유</p>

46) SCCR, Provisional Working Document, pp. 27-29.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b.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보다 길게 이용될 수 없는 경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전송의 기술적 측면에 따르기 마련이거나 필수적인 자료의 순간저장 또는 임시저장을 포함한 복제와 저장</p> <p>(4) 불법으로 제작되거나 취득된 저작물 복제본에 의해 실연되거나 전시된 경우,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그 저작물 복제본이 불법으로 제작되거나 취득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p>
	<p>37. 교육기관과 연구기관</p>	<p>(1) 체약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권리자의 승인 없이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교사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에 동의하여야 한다.</p> <p>a. 매개체를 통해 제삼자들 사이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적 또는 부수적이고 기술적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인 임시적 복제</p> <p>b. 일종의 사진 기술의 이용 또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어떤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복제</p> <p>c. 사적 이용 및 학습이나 연구에 직·간접</p>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적으로 상업적 관련성이 없는 목적을 위해 어떠한 매체로 복제하는 행위</p> <p>d. 방송기관이 방송을 위해 설비를 이용하여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일시적 녹음(녹화) (이례적인 기록물적 특성에 근거하여 그러한 녹음(녹화)를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공적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p> <p>e. 병원 또는 교도소와 같은 일상적인 학습 환경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복제하는 행위</p> <p>f. 전적으로 번역, 시험, 학습 또는 과학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 한함)</p> <p>g. 상호운영성 확보,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역설계 또는 역분석</p> <p>h.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특정 장애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러한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p> <p>i. 시사 보도에 있어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대상의 이용</p> <p>j.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대상이 이미 대중에 공개되어 있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가 표기되어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정 관행에 따라 행해지는 비평이나 검토 등을 위한 인용</p>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k. 공중보건 또는 공공안녕을 위한 이용</p> <p>l. 행정, 입법, 사법 절차의 적절한 이행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이용</p> <p>m.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 강연 또는 그와 유사한 저작물을 정보 제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 한함)</p> <p>n.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파스티세를 위한 이용</p> <p>o. 건축물이나 조각품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p> <p>p. 다른 자료에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을 부수적으로 삽입하는 행위</p> <p>q. 일체의 상업적 이용을 배제하고, 예술작품의 공개 전시회 또는 판매를 광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p> <p>r. 장비의 설명 또는 수리와 관련된 이용</p> <p>s. 통신에 의한 이용 또는 연구 또는 사적 이용</p> <p>(2) 전항에 규정된 특별한 예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베른협약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립된 국가의 관행에 따라 새로운 예외와 제한을 정할 수 있다.</p> <p>(3) 체약국은 본 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예외에 더하여 공정 이용의 법리를 채택할 수 있다.</p>

5. 연구 목적의 이용

아프리카 국가 그룹은 1)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체약국의 공적자금 지원에 의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해야 하고, 2) 전적으로 과학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3)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권리자는 연구 목적을 위해 그 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4) 비영리 교육기관이 적법하게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비영리 교육기관 등에 이전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규범(안)을 제안했다.

<표 5> 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안)⁴⁷⁾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아프리카 그룹	39. 공적자금에 의한 연구에 대한 접근	(1)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체약국의 공적자금 지원에 의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되어야 한다. 본조 (2)항의 적용을 받는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공개가 체약국의 안보나 다른 필수적인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0. 교육, 학문 또는 연구의 촉진을 위한 권리	(1) 체약국에 위치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은 교육, 개인 학습 또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인쇄 또

47) SCCR, Provisional Working Document, pp. 31-34.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는 그와 유사한 복제 방식으로 발행하는 행위</p> <p>b. 번역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출판하는 행위</p> <p>c.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구성원인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p> <p>d.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교육 목적으로 제작·배포되는 교육 자료에 포함시키는 행위</p> <p>(2) 체약국에 거주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저작물의 복제본을 국제연합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으로 분류되는 다른 체약국에 적법하게 수출할 수 있다.</p>
	<p>41.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p>	<p>(1) 체약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권리자의 승인 없이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교사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저작물 또는 저작권접권 보호대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에 동의하여야 한다.</p> <p>a. 매개체를 통해 제삼자들 사이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적 또는 부수적이고 기술적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인 임시적 복제</p> <p>b. 일종의 사진 기술의 이용 또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어떤 과정에 의하여 야기되는 복제</p>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c. 사적 이용 및 학습이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상업적 관련성이 없는 목적을 위해 어떠한 매체로 복제하는 행위</p> <p>d. 방송기관이 방송을 위해 설비를 이용하여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일시적 녹음(녹화)(이례적인 기록물적 특성에 근거하여 그러한 녹음(녹화)를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공적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p> <p>e. 병원 또는 교도소와 같은 일상적인 학습 환경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복제하는 행위</p> <p>f. 전적으로 번역, 시험, 학습 또는 과학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 한함)</p> <p>g. 상호운영성 확보,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역설계 또는 역분석</p> <p>h.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특정 장애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러한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p> <p>i. 시사 보도에 있어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대상의 이용</p> <p>j.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대상이 이미 대중에 공개되어 있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가 표기되어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정 관행에 따라 행해지는 비평이나 검토 등을 위한 인용</p>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k. 공중보건 또는 공공안녕을 위한 이용</p> <p>l. 행정, 입법, 사법 절차의 적절한 이행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이용</p> <p>m.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 강연 또는 그와 유사한 저작물을 정보 제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 한함)</p> <p>n.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파스티세를 위한 이용</p> <p>o. 건축물이나 조각품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p> <p>p. 다른 자료에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을 부수적으로 삽입하는 행위</p> <p>q. 일체의 상업적 이용을 배제하고, 예술작품의 공개 전시회 또는 판매를 광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p> <p>r. 장비의 설명 또는 수리와 관련된 이용</p> <p>s. 통신에 의한 이용 또는 연구 또는 사적 이용</p> <p>(2) 전항에 규정된 특별한 예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베른협약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립된 국가의 관행에 따라 새로운 예외와 제한을 정할 수 있다.</p> <p>(3) 체약국은 본 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예외에 더하여 공정 이용의 법리를 채택할 수 있다.</p>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42. 과학을 위한 특별 예외	<p>(1) 전적으로 과학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해석에 있어서 다음 각 호는 본 조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정부단체 또는 공무원이 고용 중에 제작한 과학 자료 또는 교육 자료에 대한 복제 b. 검색엔진, 자동지식발견도구 또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발견될 다른 디지털 도구에 의한 저장, 아칭, 링킹, 데이터마이닝 방법, 데이터 조작 처리, 가상 과학 실험을 포함한 비상업적인 목적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적법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복제와 재이용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밝혀야 함) c.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을 담은 정보와 데이터의 모음을 포함하여 아이디어, 사실, 데이터, 조사 결과 또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의 이용이나 재이용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밝혀야 함) d. 상기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학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는 저작권의 남용으로 간주된다. <p>(2)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소유자는 본 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 목적을 위해 그 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p>

제 3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제안국가	국제규범(안)	내용
		<p>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적으로 과학적 연구만을 위하여 그러한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하려는 연구자가 불법적으로 거절당한 경우에는 비상업적인 목적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저작물에의 접근과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가용한 반우회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p> <p>(3) 상업적인 목적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과학 저작물에의 접근과 과학 저작물의 이용이 불법적으로 거절당한 연구자가 그러한 저작물에 접근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반우회조치를 사용하였다면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4) 상기 규정을 무효로 하는 계약은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p>
	43. 컴퓨터 프로그램	<p>체약국에 위치한 비영리 교육기관이 적법하게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비영리 교육기관이나 다른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수진, 직원 및 학생에게 이전하는 것은 14(2)에서의 직·간접적인 상업이익을 위한 대여나 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p>

제 4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 1 절 미국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미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관한 포괄적 일반규정⁴⁸⁾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어떤 목적을 위한 이용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그 밖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들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⁴⁹⁾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미국 저작권법은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1) 체계적이고, 서적 매수를 대체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연구 목적으로

48)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참작하여야 한다.

-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3)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 (4) 그 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는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이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49) 민경재, 앞의 논문, 97면.

도서관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⁵⁰⁾ 2) 보존 목적 또는 제108조 (a)항에 해당되는 도서관에서의 연구를 위한 보관만을 목적으로 비공표된 서적이나 음반을 3부까지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¹⁾ 복제본의 원본이 이용자의 소유이고, 도서관이 복제본이 사적인 이용을 넘어서 이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적은 분량에 한해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²⁾

50)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a) 이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 또는 그들의 업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그의 직원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b)항과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1부만 제작하거나, 다음의 경우에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그 복제나 배포가 아무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의 소장물이 i) 공중에 개방되어 있거나, ii)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 또는 이러한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가 속한 기관과 관계가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3) 그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에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복제되는 복제물과 음반에 나타나는 저작권 표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표시가 이 조의 규정상 복제되는 복제물이나 음반 상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기술하는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

51)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b) 이 조에 따라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한은 다음의 경우에, 그 보존과 안전을 목적으로, 또는 오로지 (a)항 (2)호에 규정된 형태의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에 연구용으로 납본하기 위하여 복제되는 미발행 저작물의 3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적용된다.

(1) 복제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이 현재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에 소장되어 있을 것; 그리고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되는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 형식으로 달리 배포되거나, 그 형식으로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의 건물 밖에 있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할 것

52)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d) 이 조에 따라 복제 및 배포할 권한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보호되는 선집이나 정기간행물의 기사 또는 그 밖의 기고문을 복제한 1부의 복제물, 또는 보호되는 다른 저작물의 적은 부분을 복제한 1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적용된다.

2. 교실에서의 이용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1항은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사와 학생이 직접 대면수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복제물이 불법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강의를 목적으로 한 이용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⁵³⁾ 제110조 2항은 교육 목적으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과 음악 저작물을 강의실, 교육과 관련된 장소에서 체계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이들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1) 그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가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 그리고

(2)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가 그러한 요청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그 요청 서식에 이를 포함시킬 것.

53)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특정 실연과 전시에 대한 면책)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교사나 학생이 교실이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유사한 장소에서 비영리 교육기관의 대면 교육활동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 하는 행위. 다만, 영화나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 그 실연 또는 개별 화면의 전시가 어떤 법전에 따라 불법적으로 제작되었고, 그 실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복제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특정 실연과 전시에 대한 면책)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경우에,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중개된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실연 또는 전시될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저작물, 또는 어떤 법전에 따라 불법적으로 제작되었거나 취득되었고 송신하는 정부기구나 인가된 비영리 교육기관이 이를 알았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는 복제물이나 음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실연이나 전시를 제외하고, 송신에 의하여 또는 송신 과정 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저작물의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을 실연하거나 또는 저작물을 실제 수업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전시되는 것에 상응한 양만큼 전시하는 행위

(A) 그 실연이나 전시가 정부기구나 인가된 비영리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중개된 교육활동의 정규적인 일부로서 제공되는 학교 교육의 통합된 일부로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또는 실제 감독 하에 행해지고;

서는 교사의 실제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들로 구성된 것이어야 하며, 조직적·계통적인 교육 지도 활동으로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⁵⁵⁾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비영리 교육기관 수업에서의 도서 및 정기간행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⁵⁶⁾⁵⁷⁾을 적용을 받는다.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 1) 즉시 공연을 위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진 긴급 복제, 2) 공연이 아닌 학문적인 목

(B) 그 실연이나 전시가 송신되는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되고 중대하게 도움이 되며;
(C) 송신이 오로지 다음을 위하여, 그리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송신을 수신하는 것이 다음에 한정되는 경우

- (i) 송신이 행해지는 수업 과정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생들; 또는
- (ii) 그것이 그들의 공적인 임무 또는 직무의 일부인 정부기구의 간부 또는 직원들

(D) 송신하는 기구 또는 기관이

- (i)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저작권에 관한 미국의 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정보 자료를 교사, 학생 그리고 관련 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료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학생들에게 하는 경우

(ii) 디지털 송신의 경우에는

(I) 다음을 합리적으로 방지하는 기술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aa) 송신하는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송신을 수신하는 사람이 그 수업의 기간보다 더 오래 그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는 것; 그리고

(bb) 그 수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허락 없이 다시 송신하는 것

(II) 그러한 보유나 허락받지 않은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기술 조치를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55) 양선영, 앞의 논문, 28면.

56) Agreement on Guidelines for Classroom Copying in Not-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Books and Periodicals, available at <http://www.copyright.gov/circs/circ21.pdf>

57) ‘비영리 교육기관 수업에서의 도서 및 정기간행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허용되는 이용과 금지되는 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이용과 금지하는 이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제3회 저작권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2011.05)], 17면 참조.

적을 위하여 공연할 수 있는 단위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초록의 복제, 3) 자신의 공연에 대한 평가나 연습을 위한 복제물 제작, 4) 교육기관이나 교사가 듣기훈련 또는 시험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음원에 대한 복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미국은 디지털 시대의 현실에 맞는 교육·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2002년에 제정된 이른바 TEACH Act(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에 의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가 개정되었으며, 그 결과로 일정한 제한 아래 원격교육에서의 저작물의 공연이나 전시, 그리고 저작물의 전송과 수신 등을 허용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부기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 원격 교육의 목적으로 모든 저작물을 전시, 공연할 수 있으며, 3) 원격 교육 수신의 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수신자격을 제한하여 해당 과정을 등록한 학생, 정부기관의 공무원 또는 근무자에 제한되고,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만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격 교육을 위해 허용되는 이용에 대한 제한으로, 1) 원격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전시 또는 공연에 있어서 불법 복제물이 이용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원격 교육의 주체가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본질적으로 원격 교육 목적의 전시나 공연용으로 제작 또는 판매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그리고 3) 영화나 연극저작물 또는 음반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한된 부분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을 이유로 하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연구 목적의 이용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이용의 법리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 이상으로 복제하지 않고, 잠재시장에 대한 영향이 없다면 공정이용에 포함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 2 절 독일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독일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작권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5조부터 제63조에 걸쳐 저작권이 제한되는 개별 제한규정을 가지고 있고, 제한규정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와 관련해서는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전송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독일 저작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적 복제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저작권법 제47조는 학교 및 교원양성과 교원연수를 위한 시설, 그리고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국립의 주교육소 등이 교육방송 중에 방송되는 저작물을 녹화·녹음매체에 옮기는 방법으로 개별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그 녹화물 내지 녹음물은 수업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⁸⁾

58) 제47조 (학교방송)

(1) 교원 양성 및 교원 연수의 학교와 시설은 학교에서 방송되는 저작물의 몇 개의

2. 교실에서의 이용

제53조 3항⁵⁹⁾에 의해, “저작물의 적은 부분, 적은 분량의 저작물 또는 신문이나 잡지에 발행되거나 전송된 개개의 기고”를 학교 수업의 예증을 위하여, 또는 국가시험 및 학교, 대학, 비영업적인 교육 및 재교육시설 그리고 직업교육시설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복제가 요구되는 한도 내, 즉 수업 참여 인원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보상금지급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의 일부분, 적은 분량의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개개의 미술저작물 또는 개개의 사진저작물이 발행 후에 많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모아 그 성질상 단지 학교, 비영리목적의 교육 및 재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시설에서의 수업에 이용되는 편집물의 일부로서 수록될 경우, 그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전송이 허용된다(복제물에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편집물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⁶⁰⁾

복제본을 녹화물 혹은 녹음물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 및 국립 주교육소 혹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

(2) 녹화물 내지 녹음물은 수업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늦어도 학교방송으로 복사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에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저작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이 지급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9) 제53조 (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3) 저작물의 작은 부분, 사소한 범위의 저작물 혹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행되었거나 공중 전달된 개개 기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복제물을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당해 복제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한 한도에서 허용된다. 학교에서 수업을 위한 용도로 정해진 저작물의 공중전달은 항상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허용된다.

1. 비영업적인 교육시설, 재교육시설, 그리고 직업훈련시설에서 수업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수강생에 필요한 수만큼
2. 국가시험 그리고 학교, 대학, 비영업적인 교육시설, 재교육시설, 그리고 직업훈련시설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60) 제46조 (교회, 학교, 혹은 수업에 사용되기 위한 편집물)

(1) 공표 후에 편집물로 수록되어 많은 저작자의 저작물이 모여져 그 성질상 단지 학교에서의 수업, 비영리 교육 및 재교육시설 혹은 직업교육이거나 교회에서 사용되는 경우, 편집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저작물의 일부분, 근소한 범위의 어문저작물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전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 제 52조의 a에 따라 저작물이나 인쇄물의 일부분이 학문적인 목적이나 수업에 참여한 한정된 사람들이 공유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전송행위에 대해서도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혹은 음악저작물, 개개의 미술저작물, 혹은 개개의 사진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은 허용된다. 학교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저작물의 공중전달에는 항상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허용된다. 그 복제본에 혹은 공중전달시에 편집물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제1항은 음악저작물에는 음악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는 음악수업을 위한 편집물로 수록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제1항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의사를 저작자에게 혹은 저작자의 주소 혹은 거소가 알려지지 아니한 때에는 전속 용익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가 송부된 후 2주일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복제 혹은 공중전달이 시작될 수 있다. 전속 용익권자의 주소 혹은 거소가 알려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는 연방관보에 공표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4) 제1항, 제2항에서 허용되는 이용에 관하여는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61) 제52조 a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전송)

(1)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그것이 각각의 목적에 의하여 요구되고 비영리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정당화되는 한도내에서, 허용된다.

1. 공표된 저작물의 적은 부분, 적은 분량의 저작물 및 신문이나 잡지의 개개의 기고를 학교, 대학, 비영리의 교육 및 재교육시설 또는 비영리의 직업교육시설의 수업에서 설명의 목적으로 오직 일정하게 제한된 수업참가자에 대해서만 사용하거나
2. 공표된 저작물의 부분, 적은 분량의 저작물 및 신문이나 잡지의 개개의 기고를 오로지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연구를 위한 이용

제53조 2항⁶²⁾에 의해, 1) 개인적인 학문적 이용을 위한 것이고, 그 복제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2) 개인적인 보존기록에 수록하기 위한 것이고, 그 복제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복제원본으로 자기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한도 내에서, 3) 시사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해당 저작물이 방송을 통하여 송신되는 저작물인 경우에 한해 저작물의 개개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학교수업에서 사용될 목적이 있는 저작물의 전송은 항상 권한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화저작물의 전송은 이 법의 적용영역에 있는 영화관에서의 통상적인 이용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항상 권한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물의 복제도 허용된다.

(4) 제1항에 따른 전송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청구권은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62) 제53조 (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2) 다음 각 호의 사용을 위하여 저작물의 개개 복제본을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1. 개인적인 학술상의 이용을 위하여, 이 목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며 영업 목적이 없는 한도에서
2. 개인적인 기록보존에 수록하기 위하여, 이 목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며 복제를 위한 모형으로 개인적으로 소장한 원본이 이용되는 한도에서
3. 방송을 통하여 방송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시사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보고를 위하여
4.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 a) 발행된 저작물의 사소한 부분이거나 신문 혹은 잡지 안에 실린 개개 기사가 관련되는 경우
 - b) 적어도 2년 이상 절판된 저작물이 관련되는 경우

제1문제2호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가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1. 종이 혹은 임의적 사진기술 절차나 여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에 의한 유사매체로의 복제이거나
 2. 오직 아날로그로 이용되거나
 3. 기록 보존에 직, 간접적으로 경제적이거나 영업 목적이 추구되지 않는 경우
- 제1문제3호, 제4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2문제1호 또는 제2호가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제 3 절 일본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독일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저작권법은 제30조 내지 제50조에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연구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제한되는 규정들로서는 제31조 도서관에서의 복제, 제32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제33조의2 교과용 확대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제34조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방송, 제35조 학교 그 외의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제36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의 규정을 들 수 있다.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교과용 확대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동공중송신,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일본 저작권법 제31조 1항⁶³⁾은 정령(시행령)으로 정한 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 조사 연구의 목적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것(1인 1부에 한함)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33조⁶⁴⁾와 제33조의 2⁶⁵⁾의 규정에 따라 공

63)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 국립국회도서관 및 도서, 기록 기타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기타의 시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도서관 등의 도서, 기록 기타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발행 후 상당기간을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개개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전부)의 복제물을 1인에 대해 일부 제공하는 경우

64) 제33조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

(1)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교과용 도서

표된 저작물로서 학교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할 수 있고, 시력이 약한 아동 또는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자 및 도형을 확대하여 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제34조 1항⁶⁶⁾은 학교 교육의 목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기타 이들에 준하는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아동용 또는 학생용의 도서로,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필한 것 또는 문부과학성의 저작 명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동항 규정의 취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통상의 사용료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정함을 한 경우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4) 전 3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의 통신교육용 학습 도서 및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교사용 지도서(당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의 발행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의 저작물의 게재에 대하여 준용한다.

65) 제33조의2 (교과용 확대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등)

(1)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시각장애, 발달장애 기타의 장애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아동 또는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당해 교과용 도서에 이용되고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확대 기타의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이 당해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에 의하여 복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하는 교과용 도서 기타의 복제물(점자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교과용 확대도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교과용 확대도서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상금액에 준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정함을 한 경우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4)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81호)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행하는 자는 그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66) 제34조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1)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거한 학교전용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 혹은 유선방송 또는 당해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오로지 당해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방송대상지역을 말하며,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방송에 있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또는 유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또는 유선 방송할 수 있고, 그 방송 프로그램용 교재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⁷⁾

2. 교실에서의 이용

일본 저작권법 제35조 1항⁶⁸⁾에 따라, 교실수업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된다. 그리고 제36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입학시험, 그 외 지식 기능에 관한 시험이나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시험문제로서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다.⁶⁹⁾

서는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 제14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송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 중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하고 당해 방송 프로그램용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용의 교재에 게재할 수 있다.

67) 이 경우에도 교과서에의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자에게의 통지의무와 저작권자에게의 보상금 지급 의무 및 출처 명시 의무가 발생한다.

68) 제35조.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복제 등

(1)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 수업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복제의 부수 및 태약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제36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1)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입학시험 기타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시험 또는 검정 문제로서 복제 또는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며,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당해 공중송신의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일본 저작권법 제35조 2항⁷⁰⁾은 교실 내에서의 수업이 그 외의 장소에서 동시중계(공중송신)되는 경우에 교실에서 이용되는 교재를 예외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그 외의 장소로 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개되면서, 원격교육 등 수업의 중계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의 학습자를 위해 교실에서 복제·배포·게시된 교재 등을 위성통신·인터넷 등을 통하여 송신할 필요에 의해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교실에서 교사가 교재로서 게시하는 자료 등을 그 외 장소로 송신하는 행위, 교실에서 교사가 교재로서 복사·배포한 저작물을 그 외 장소로 송신하는 행위 (예컨대, 메일로 송신하는 것) 등이 허용되게 되었다.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현행 일본 저작권법 하에서, 원격교육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의 제한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격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교실 이외의 장

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전항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을 하는 자는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70) 제35조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복제 등)

(2)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수업과정에서 당해 수업을 직접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을 그 원작품 혹은 복제물을 제공 혹은 제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당해 저작물을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연, 연주, 상영 혹은 구술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업이 행해지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수업을 동시에 받는 자에 대해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당해 공중송신의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로의 송신을 허용하고 있는 제35조 2항의 규정은 ‘교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서버 내에 수업 내용을 미리 축적해 두고, 임의 시간 및 임의의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원격교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연구 목적의 이용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1항⁷¹⁾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연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제 4 절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우리 저작권법은 독일과 일본의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권 제한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들로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저작권법은 지난 2011년에 법 개정을 통해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관한 포괄적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신설하여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71) 제32조 (인용)

(1)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1.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우리 저작권법은 제25조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⁷²⁾ 2)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전부(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를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⁷³⁾ 상기 요건 하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에, 이용자인 교육기관에게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⁷⁴⁾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한하여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가 인정된다.⁷⁵⁾

72)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73)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74)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5)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2. 교실에서의 이용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으며,⁷⁶⁾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⁷⁷⁾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0조⁷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76)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78)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교육 목적 저작물의 복제·배포와 동일한 요건 하에서 저작물의 전송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 또는 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저작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을 전송할 수 있다.⁷⁹⁾ 또한, 저작물의 전송에 특유한 요건인 송신형태와 관련해서는 이시송신⁸⁰⁾까지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진정한 원격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⁸¹⁾

5. 연구 목적의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연구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고 있으며,⁸²⁾ 이를 판단할 때에는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⁸³⁾

79) 저작권법 제25조 2항 및 3항 참조.

80) 원격교육에 있어 수업내용을 송신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교사가 스튜디오 등에서 혼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경우(동시송신), 사전에 녹음 또는 녹화한 수업내용을 교과과정상 정해진 특정 수업시간에 송신하는 경우, 사전에 녹음 또는 녹화한 수업내용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서버에 올려놓는 경우(이시송신)가 있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문헌, 32면.

81)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위의 문헌, 32면.

82)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다.

83)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 5 절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규정하는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례는 권리제한을 위한 일반규정, 즉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과 그 밖에 예시규정을 두고 있는 형태의 입법례와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태의 입법례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적용을 받은 주체와 대상의 범위, 그리고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 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이용의 법리를 도입하여 이를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독일과 일본의 그것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표 6>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비교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학교 및 교육·연구 기관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제108조) - 공정이용 (제10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교원 양성과 교원 연수를 위한 시설, 청소년 보호 시설이나 국립 주교육소 등에 의한 이용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등에서 복제 (제31조 1항) -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제33조) - 교과용 확대 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제33조의 2) -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제34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등에서 복제 등 (제31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 1항 및 2항)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 3)
교실에서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실연과 전시에 대한 면책 (제110조) - 도서 및 가이드라인 - 공정이용 (제10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53조 3항) - 교회, 학교 혹은 수업에 사용되기 위한 편집물 (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복제 등 (제35조 1항)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 2항)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2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 3)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이용 (제10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 4 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미 국	독 일	일 본	한 국
이용		이용을 위한 복제 (제53조 3항)	있어서의 복제 등 (제35조 2항)	(제30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 3)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 특정 실연과 전시에 대한 면책 (제110조) - 공정이용 (제107조)	-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전송 (제52조의 a)	- 원격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 2항 및 3항)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 3)
연구 목적의 이용	-공정이용 (제107조)	- 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53조 2항)	- 인용 (제32조 1항)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 3)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현행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들에 의해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의 제한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관련 국제조약들이 3단계 테스트의 요건만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체결국들에 이를 준수할 의무만을 강제하고 있을 뿐, 그들에게 어떠한 입법이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범위 등은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태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인데, 본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례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을 받는 주체 및 대상, 그리고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WIPO저작권상설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비 작업은 권리제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는 국제규범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국제규범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특별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국제규범(안)은 저작(권)자에 보다 가까운 선진국들보다는 저작물의 이용자, 다시 말해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수혜자에 가까운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로, 선진국들의 저작권법과 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국제규범(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의 모든 경우의 이용에 제한과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⁸⁴⁾ 반면에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에

84) <표 7>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규범(안)의 비교 참조.

대한 보상의무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규범(안)과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례 간의 이 같은 괴리는 국제조약(안)의 조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비 작업은 여러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WIPO주도의 국제조약의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만을 규정하던 기존의 국제조약과는 달리,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교실에서의 이용,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그리고 연구를 위한 이용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는 국제조약이 체결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7>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규범(안)의 비교

	각국의 입법례	국제규범(안)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미국, 일본, 한국) - 학교, 청소년 보호시설 또는 국립주교육소 등에 의한 이용 (독일) -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 등 (일본, 한국) -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일본) - 공정이용 (미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학문 또는 연구의 촉진을 위한 권리로서 허용되는 이용 (아프리카 그룹 §13) - 권리소진으로 저작물의 판매, 수입, 수출 또는 다른 방법의 처분 등이 허용되는 경우 (아프리카 그룹 §14) -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실연, 낭독 또는 전시 등 (브라질 §18)

	각국의 입법례	국제규범(안)
교실에서 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 및 수업 등을 위한 복제 등 (미국, 독일, 일본, 한국)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일본, 한국) - 공정이용 (미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 행위로 침해에 대한 구제가 제한되는 경우 (아프리카 그룹 §23) -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위한 교사의 교육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번역 또는 배포 및 강연, 학술회의, 수업에 참가한 자에 의한 노트 필기 등 (브라질 §24) - 교육 목적의 실연, 복제, 교실에서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 배포 (GRULAC §25) - 교실에서의 수업 또는 과학 연구 목적의 이용 (중국 §26) (출처 등을 표기한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의무 없음)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독일, 한국) - 교실 내에서의 수업을 그 외에 장소로 동시중계 (일본) - 공정이용 (미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교사나 학생의 비상업적 이용 및 사적 이용 등 (아프리카 그룹 §30) -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 행위로 침해에 대한 구제가 제한되는 경우 (아프리카 그룹 §31) - 연구, 비평 또는 토론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 등 (브라질 §33)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전송 등 (미국, 독일, 한국) - 공정이용 (미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교육과정을 위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의 이용 (아프리카 그룹 §36)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각국의 입법례	국제규범(안)
연구 목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 (독일) -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 (일본) - 공정이용 (미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금에 의한 연구에 대한 접근 허용 (아프리카 그룹 §39) - 교육, 학문 또는 연구의 촉진을 위한 권리로서 허용되는 이용 (아프리카 그룹 §40) -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교사나 학생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의 이용 (아프리카 그룹 §41) - 과학을 위한 특별 예외 (아프리카 그룹 §42) - 비영리 교육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아프리카 그룹 §43)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은정, 국제통상법에서 저작권 보호의 변화와 그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 및 FTA 협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02)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제3회 저작권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2011.05)
- 민경재,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2)
- 박덕영, 국제조약상 저작권제한과 예외규정 및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 산업재산권 제25호 (2008.04)
- 양선영, 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 범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02)
-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의 체결과 그 의의, 창작과 권리 제6호 (1997.03)

<해외문헌>

- Agreement on Guidelines for Classroom Copying in Not-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Books and Periodicals, available at <http://www.copyright.gov/circs/circ21.pdf>
- Provisional Working Document towards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In Whatever Form)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al,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Persons

참 고 문 헌

with Other Disabilities Containing Comments and Textual Suggestions
(July 31, 2012), available at [http://www.wipo.int/edocs/mdocs/
copyright/en/sccr_24/sccr_24_8_prov.pdf](http://www.wipo.int/edocs/mdocs/copyright/en/sccr_24/sccr_24_8_prov.pdf)